

## <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 >

### 1-2-2.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.

#### 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식사도구로 숟가락만 제공하는 경우
- 일괄적으로 국에 밥을 말아 제공하는 경우
- 교사가 일방적으로 음식을 먹여주는 경우
- 교사가 일방적, 지시적 상호작용 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경우

#### 4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부모의 요구 등으로 일부 영유아의 낮잠을 재우지 않는 경우
- 특별활동 등으로 일부 요일은 낮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
- 보육일지에는 낮잠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실제로는 낮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
- 창문의 커튼이나 조명을 조절하지 않아 편안한 낮잠 분위기 조성이 미흡한 경우

### 1-2-3.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.

#### 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오전 실내놀이시간을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
- 전이시간을 포함하여 총 실내놀이시간을 2시간 이하로 운영한 경우
- 보육일지에 실내, 바깥놀이 시간을 구분 없이 기재하여 진행된 놀이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특별활동 등으로 실내 놀이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이루어진 경우

#### 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보육교사가 오전에 놀이중심으로 운영하지 않고, 학습지, 교재 활동을 하는 경우

### 1-2-4.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.

#### 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전이시간을 포함하여 바깥놀이 시간을 1시간(또는 30분)으로 배정하여 운영한 경우
- 실내, 바깥놀이 시간을 구분 없이 기재하여, 진행된 놀이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특별활동 등으로 바깥놀이가 미실시 되거나, 시간이 부족한 경우
- 미세먼지, 감염병 등으로 실내 대체활동으로 진행하였으나,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- 검토기간 동안 실내 대체활동 시 대근육 활동은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
- 특별한 사유 없이 검토기간 내내 바깥놀이를 전혀하지 않고 대체활동으로만 진행하는 경우
- ※ 바깥놀이는 오전, 오후로 나누어 진행 가능하며, 혼합연령반의 경우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

바깥놀이 시간을

편성하여 운영 가능 함

※ 바깥놀이 시간 산정 시, 놀잇감을 정리하거나, 화장실을 가는 등의 전이시간은 놀이시간에서 제외함

※ 어린이집 행사 등의 이유로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경우는 관련 내용 확인 후 월 4-5

회 내외에 한해 감안하여 평정함

#### 1-2-5. 특별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.

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특별활동을 참여하나, 운영위원회의 심의기록이 없는 경우

- 특별활동 부모동의서에 프로그램명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

- 부모가 특별활동 실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, 해당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한 경우

- 보강 등으로 일부 기간 오전에 특별활동을 실시한 경우

-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축구,영어,한자 등의 지식 습득 위주의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한 경우

경우

#### 1-3-1. 교사는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.

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교사가 자신이 계획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영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

- 일부 영유아에 대해 놀이 참여를 제한하거나, 특정 놀이만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

- 영아반에서 대집단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

#### 1-3-2.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한다.

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놀이시간 동안 교사가 보육실을 비우는 경우

- 놀이 상황을 관찰하긴 하나, 놀이에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영유아가 요구할 때만 개입하는 경우

경우

- 놀잇감이 부족하나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

- 교사가 놀이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고 과도하게 개입하여 오히려 놀이의 흐름을 끊는 경우

- 놀이와 관련하여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의 답만 요구하는 경우

- 영유아의 놀이 흥미 및 놀이 진행 상황과 관계 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

- 영유아의 놀이에 교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

#### 1-5-1. 반별 보육일지에 하루 일과 및 놀이실행에 대한 기록이 있고,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다

## 음 놀이 지원 및

### 활동 계획에 반영한다.

#### 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현장평가월에 보육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보육일지가 매일 작성되지 않은 경우
- 월간잡지, 다른 반 보육일지와 동일하게 작성하거나, 일부 단어 정도만 수정한 경우
- 보육일지 내 놀이에 대한 실행기록이 없고 일상생활, 투약, 부모전달 사항 등만 기록된 경우

우

- 놀이 및 활동에 대한 실행 여부(예: O, X로 표시)만 기재하고, 주 단위의 평가로 이루어져 매일의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- 가정학습기간, 긴급보육기간 동안 보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보육일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

#### 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보육운영 평가에 대한 내용이 이후 놀이 지원 및 활동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

우

### 1-5-2. 영유아의 일상생활, 실내외 놀이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,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.

####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일부 영유아의 관찰기록이 누락된 경우
- 영유아 관찰기록 작성시 월별로 표준보육과정 영역 1개씩 구분하여 작성하여 일상생활 관련 내용이 검토기간(현장평가월 이전 3개월 이내) 내 누락된 경우
- 일부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이 누락된 경우
-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이 연 1회만 작성된 경우
- 총평이 체크리스트로만 작성된 경우

### 2-1-2. 실내공간 구성 및 운영

#### 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성인용 변기와 성인용 세면대 사용 시, 안전발판을 1개만 마련하여 양쪽으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

- 성인용 변기 사용 시, 안전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교사가 영유아를 안아서 변기에 앉혀주는 경우

-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나, 어린이집 내 유아용 변기가 전혀 없는 경우

#### 3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

-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구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나, 필요 시 제공되지 않은 경우

### 2-1-3.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.

1. (별도의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)

- 별도의 공간을 미인가 공간 또는 지하층에 마련한 경우
- 양호실을 제외한 별도의 공간을 성인이 사용하는 공간(예:교사실, 원장실 등)에 마련한 경우

우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조리실에 양호공간을 마련한 경우
- 복도 등 이동통로에 유희실을 마련한 경우

2-2-1.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.

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정원 50인이상 어린이집으로

- 옥외놀이터에 고정식 놀이기구가 전혀 없는 경우
-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놀이터 인가사항과 실제 사용하는 놀이터가 상이한 경우
- 타 기관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의 놀이터를 사용하는 경우

2-3-1.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.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혼합연령반과 단일연령반을 합반 운영하며, 교사 대 아동비율을 초과하는 경우

예) A반(만0,1세/1:3) + B반(만1세/1:5) = A,B반(만0,1세/2:8)

예) A반(만1,2세/1:5) + B반(만2세/1:7) = A,B반(만1,2세/2:12)

\* 그간 시스템에는 혼합연령반과 단일연령반이 각각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합반하여 운영하는 경우,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감안하여 평정하였으나

2022년부터는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하여 실제 혼합연령반으로 운영 시,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(정원 기준)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평정

-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보와 다르게 운영하여,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

예) A반(만1세/1:5), B반(만1세/1:5) -> A반(만1세/1:6), B반(만1세/1:4)

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 적용된 반을 포함하여 2개반 이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

예) A반(만1세/1:5) + B반(만1세/1:6) = A,B반(만1세/2:11)

- 혼합연령반과 단일연령반을 합반 운영하여 연령별 반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
예) A반(만1,2세/1:5) + B반(만2세/1:7) = A,B반(만1,2세/2:12)

2-3-2.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다.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부모 수요조사 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
- 수요조사서에 부모가 희망 하원시간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
- 일부 영유아의 부모 수요조사를 미실시한 경우

-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연장보육반 현상이 미포함되어 있는 경우

3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연장보육반에서 특별활동을 신설하여 실시하는 경우
- 연장보육반 일지가 전혀 없어 연장보육반의 운영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

**2-4-2.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가족을 지원한다.**

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개별면담 실시 일자가 누락된 경우
- 사전면담조사지만 마련된 경우
- 개별면담이 담임교사가 아닌 원장에 의해 진행된 경우

**3-1-1.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.**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복도, 자료실, 교사실 계단 등에 먼지가 쌓여있는 경우
- 화장실 변기에 오물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
- 2명 이상의 영유아가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고,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
- 기저귀 같이 시, 지정된 공간(기저귀 같이 공간, 기저귀 같이대, 화장실 등)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
- 개별 영아의 기저귀 같이 전·후에 기저귀 같이대를 닦아내지 않는 경우

3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개별 침구를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
- 하나의 요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
- 놀이 매트를 요로 사용하는 경우
- 여분의 침구 사용 후 바로 세탁하지 않는 경우

4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창문을 2/3이상 가려 채광이 미흡한 경우(예: 불투명 썬팅지, 한지, 블라인드, 적재물 등)
- 연면적 430㎡이상인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, 측정결과가 ‘미흡’에 해당하는 경우
- 창문이 없는 보육실 내에 공기청정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
- 미세먼지 농도가 ‘나쁨’이상이나, 어린이집 내 공기청정기를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
- ※다만,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내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한시적으로 감안하여 평정

**3-1-2.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.**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실내 현관문에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, 하루 종일 잠그지 않은 경우

- 복도, 계단에 있는 120cm이하 창문(2층 이상)에 창문보호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
- 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  - 전기콘센트에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
  - 라디에이터에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
  - 칫솔 살균 소독기, 개별사물함 등에 모서리 보호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
- 4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  - 실내 조리실 출입문이 하루 종일 열려있는 경우
  - 원장, 교사가 영유아와 함께 조리실에 들어가는 경우

### 3-1-3.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.

- 4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  - 교사용 사무용품(칼, 성인용 가위 등)을 영·유아 손 닿는 곳에 보관한 경우
  -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를 영·유아 손 닿는 곳(신발장, 교구장)에 보관한 경우
  - 약품(비상약품함, 실외활동용 비상약품 가방,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등)을 영·유아 손 닿는 곳에 보관한 경우
  - 공구류(드라이버, 송곳, 삽, 호미 등)를 영·유아 손 닿는 곳(현관, 실외놀이터 등)에 보관한 경우
  - 방향제 등을 영·유아 손 닿는 곳에 보관한 경우

### 3-2-1.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·간식을 제공하고 있다.

- 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  -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임의 변경하는 경우
  - 식단표에 계획된 간식을 가정에서 가져오게 하는 경우(예: 우유)
  - 토요일에 등원한 영유아가 있으나 급·간식의 계획 및 실행기록이 없는 경우
  - 급·간식 제공기록을 개인 문자, 카카오톡 등으로만 관리하는 경우
  - 이유식을 먹는 영아가 있으나, 영아의 월령,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영아용 식단(이유식)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
  -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에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기준(시간,온도)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- 4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  -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지침에 실질적인 대처방법(대체음식 제공 등)이 누락된 경우
  - 식품 알레르기 질환 영유아를 고려한 조리 및 배식에 대한 기록이 누락된 경우
  -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
  -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호전되었으나,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

### 3-2-2. 식자재의 구입·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.

- 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보관된 식자재가 밀봉되지 않은 경우(예:쌀포대, 다시마 등)
- 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  - 교사실, 자료실 등에 보관된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(예: 과자류, 음료수 등)
  - 조리실에 보관된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(예: 소스(양념)류, 면류 등)
  - 식품 입고일을 유통기한 날짜로 잘못 기재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
  - 식품을 다른 용기에 소분한 후 수기로 작성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
  - 가정에서 보내준 간식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(예: 우유, 요구르트 등)
  - 미술활동 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으나, 별도로 용도를 구분하지 않은

경우(예: 밀가루, 마카로니 등)

- 3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  - 조리대, 가스레인지, 냉장고, 전자레인지, 후드 등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
  - 후드나 환풍기가 없거나 고장 나서 조리실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
- 4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  - 도마와 칼을 용도별로 3종 이상(육류용, 어패류용, 기타 채소류용) 구비하지 않은 경우
  - 육류 및 생선을 절단된 상태로 공급받아 해당 칼과 도마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
  - 용도별로 구분된 도마와 칼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
  - 식수대에 마련된 사용 전 컵과 사용 후 컵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

### 3-2-3.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.

- 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  - 조리실에서 오후간식 준비 시 전용 앞치마 또는 머릿수건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
  - 조리 중인 식품이나 조리된 식품을 맨손으로 다루는 경우
  - 하나의 배식도구(집게, 가위 등)로 여러 가지 음식을 배식하는 경우
- 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  - 급·간식 전 책상을 닦지 않는 경우
  - 하나의 배식도구(집게, 가위 등)로 여러 가지 음식을 배식하는 경우
  - 개별 식기(식판, 접시 등)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
  - 여러 명의 간식을 칸이 나뉘어 있는 하나의 식기에 배식하는 경우
  - 국에 밥, 반찬을 한꺼번에 말아 제공하는 경우
  - 식기도구를 떨어뜨렸으나, 교체하지 않은 경우
- 3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  - 평가일 이전에 조리된 음식이 재배식 되는 경우
  - 평가일 이전에 조리된 음식이 냉장고(조리실, 교사실 등)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(교사용 반찬 포함)
  - 평가일 이전에 전처리 한 음식이 냉동보관 되어 있는 경우(예: 삶은 시래기, 육수 등)

4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마실 물을 비치하는 경우
- 점심식사 또는 실외활동 후 등 필요 시에만 마실 물을 제공하는 경우
- 마실 물은 제공하였으나 물 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

**3-3-1. 손 씻기,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.**

3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점심식사 후 영유아의 이닦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
-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영유아의 이닦기를 하지 않으나, 관련내용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
-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닦아주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
- 교사가 이닦기 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
- 칫솔, 양치컵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

**3-3-2.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.**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아픈 영유아의 처리절차만 마련되어 있는 경우
- 다친 영유아의 처리절차만 마련되어 있는 경우
- 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내용이 3가지 미만인 경우

3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투약의뢰 및 투약보고 기록이 누락된 경우
- 투약의뢰 관련 기록 미구비 상태로 투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(예: 유선으로만 확인)
- 투약의뢰 기록에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(예: 용량, 시간(횟수) 등)
- 투약보고 기록에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(예: 투약자 등)
- 냉장보관 약(항생제 등)을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

4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실외활동 시, 실외용 비상약품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
- 비상약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
- 비상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(예: 일회용 알코올 스프 등)
-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이 있는 경우

**3-3-3.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.**

4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감염병에 대한 관리수칙에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
- 감염병의 예방 증상,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분기별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

**3-4-1.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규정에 따라 귀가지도를 한다.**

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(영유아가 등·하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)

- 귀가동의서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

### 3-4-2.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.

4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낮잠시간에 영유아만 남겨두고 보육실을 비우는 경우

- 활동공간에서 자리를 비운 채 CCTV 화면으로 영유아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

### 3-4-3. 등·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.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영아의 수에 맞게 영유아용 보호장구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

- 영아용 보호장구가 파손된 경우(임의로 보호장구의 등받이를 제거한 경우 포함)

-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(미인증제품, 품질보증 Q 등)

-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뒷열 좌석 부근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

- 원장 및 운전자, 동승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

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차량 자체에 대한 안전점검 내용(엔진, 브레이크 등)이 누락된 경우

- 매일 차량 안전점검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

4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차량에 고정되지 않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를 착용한 경우

- 영아용 보호장구의 어깨띠만 착용하는 등 보호장구를 부적절하게 착용한 경우

-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

- 파손된 영아용 보호장구, 개별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

- 영유아 및 차량에 동승한 성인이 개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이 출발하는 경우

- 36개월 미만 영아가 15kg미만이나, W3또는 II그룹 제품을 착용한 경우

### 3-5-1.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.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영아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

- 영아반 안전교육을 대집단으로 실시한 경우

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소방대피훈련을 미실시한 경우(미세먼지, 날씨, 감염병으로 인한 사유 포함)

- 건물 외부가 아닌 어린이집 현관, 아파트 공동현관 등으로 대피한 경우

- 황사 대응훈련, 한파 대응훈련 등 영유아가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훈련으로 진행한 경우

### 3-5-3.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.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
- 비상대피로에 적재물이 있는 경우
- 피난구 유도등이 상시 점등되지 않는 경우
- 비상대피로가 아닌 곳에 피난구 유도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

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각 층이 아닌 중층, 계단 등에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
- 분말소화기가 전혀 없으며, 투척용 소화기만 구비한 경우
- 투척용 소화기가 파손되거나, 내용물이 소실된 경우
- 소화기의 입력게이지가 '0'인 경우

3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벽면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경우
- 복도, 계단, 현관, 베란다, 창고 등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
-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하여 화재사이렌을 부착한 경우
- 가스누설경보기가 미설치 된 경우
- 가스누설경보기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

**4-1-1.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.**

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보육과정 운영 및 재무회계 교육 중 하나라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
- 자체교육으로 진행하는 경우

**4-1-3.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.**

2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업무분장에 일부 교사의 업무가 없는 경우
- 교사 면담 시 본인의 업무를 모르는 경우
- 비상 시 업무분장만 되어 있는 경우

3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수시면담으로만 진행한 경우
- 일부 교사의 개별면담이 미 실시 된 경우(실시기록 미확인)
- 사전 설문기록지만 작성된 경우

**4-2-2. 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과 업무지원 설비를 마련하고 있다.**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개인 사물함 1개를 2명의 교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
- 개인 사물함이 교사 수에 비해 부족한 경우
- 개인 사물함에 어린이집 물품이 가득 차 있어 실제 교사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

**4-3-1.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, 이를 준수하고 있다.**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원장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(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하지 않을 시)
- 어린이집에 임용되어있는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(운전기사 등)
-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
- 근로계약서에 근무상황이 상이한 경우(예: 조리사의 근로계약서를 보육교사용으로 작성)
-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교직원(조리사, 운전사 등)이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

3. 1항목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보수규정을 다운받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여 보수규정에는 승급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으나, 실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
-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이 명시되어 있으나, 실제로는 백원 단위를 절사하여 지급하는 경우

**4-3-1.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, 이를 준수하고 있다.**

3. 2-3항목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연장반을 겸임하는 담임교사에게 연장보육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
- 임용된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

**4-4-1.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.**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있으나 연간 교육 계획에 직무교육 관련 계획이 없는 경우
-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연간 교육 계획에는 해당 교직원인 직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

**4-4-2.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.**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동료평가로만 진행된 경우
-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(예: 관찰자, 평가 및 지원내용 등)
- 한 반에 담임이 2명 이상이나, 반 차원으로 작성되어 개별 교사의 지도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

**4-4-3.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.**

1. (자주 발생하는 N평정 사례)

-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만 실시한 경우
- 원장이 아닌 대표자가 근무평가를 진행한 경우